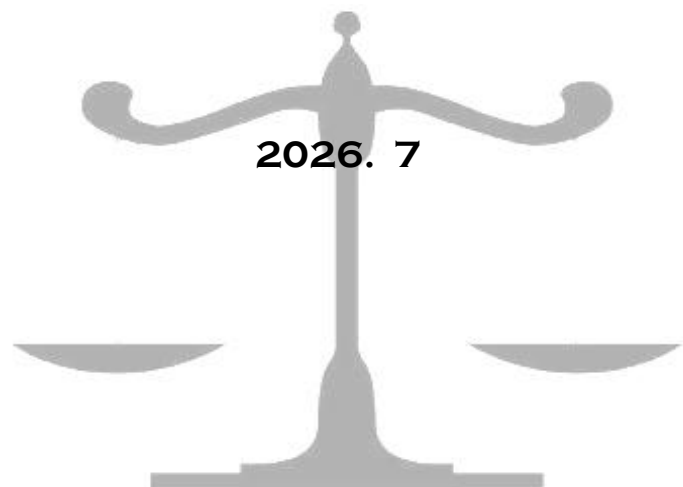


한국마사회 지정장구목록

REGISTER OF APPROVED GEAR



한국마사회 심판처

목 차

1. 개념의 정의	1
2. 관련 경마시행 규정	2
3. 조교사의 준수의무	3
4. 지정장구의 범위	4
4.1 재갈	4
4.2 재갈보조 장구	7
4.3 가면	8
4.4 굴레	11
4.5 고삐	13
4.6 다리보호 장구	13
4.7 보조 장구	14
4.8 임시사용 장구	15
4.9 채찍	16
4.10 기승보호 장구	17
4.11 편자	18
5. 사용해지 및 승인 신청 방법	23

1. 개념의 정의

가. 지정장구

- ☐ 한국마사회 (아래 "KRA") 에 등록된 경주마가 경주 및 주행/출발심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장구로서 『승인장구』와 『자유사용장구』로 나눈다.
- ☐ 승인장구 : KRA 지정장구 중 사용을 위해서는 심판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장구
- ☐ 자유사용장구 : KRA 지정장구 중 심판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구

나. 사용불가장구

- ☐ KRA 지정장구 이외의 모든 장구를 총칭

다. 장구의 임시사용 (2010. 11)

- ☐ 예시, 경주로 입장 등 특정목적에 위해 임시로 지정장구 또는 사용불가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심판위원의 사전 승인 필요
- ☐ 장구 사용 사례
 - ☐ 경주로입장을 목적으로 사용불가장구인 변형고정마르팅게일(살바)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장구 가운데 자유사용장구인 귀가면을 예시 또는 경주로 입장에 한해 사용하는 경우

2. 관련 경마시행규정

제58조(장구의 제한)

- ① 조교사는 출전마에 대해 본회가 지정한 장구 중에서 사전에 심판위원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사용 승인을 받은 장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1.12.5.>
- ② 조교사는 출전마에 본회가 지정하는 편자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편자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판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주지역본부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출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5.>
- ③ 기수는 자신 또는 다른 기수가 탄 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장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12.5.>
- ④ 기수가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60cm 이상 70cm 이하로 한다. 다만, 마차경주에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150cm 이상 170cm 이하로 한다.
- ⑤ 기수는 경주 중 안전을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안전모와 보호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⑥ 출전마의 장구는 출전준비소부터 해당 경주가 끝날 때까지 임의로 바꾸거나 탈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12.5.>
-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입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구는 심판위원의 승인을 받아 출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조교사의 준수 의무

- 조교 중 사용 장구 역시 KRA 지정장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기타 사유로 사용불가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동 장구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,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거나, 또는 기존 지정 장구로 충분히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은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장구는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(2020.7).
- 경주, 주행/출발심사 및 조교 시 사용하는 장구는 항상 적절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.
- 주행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경주마의 장구 사용은 실제 경주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(2010. 11)

※ 장구 사용 사례

구 분	주행심사 전	주행심사 시	올바른 기준
사례 A	눈귀가면 신청	미사용	눈귀가면 착용이 옳음
사례 B	신청 장구 없음	별도 신청 없이 가지재갈 착용	미사용이 옳음

4. 지정 장구의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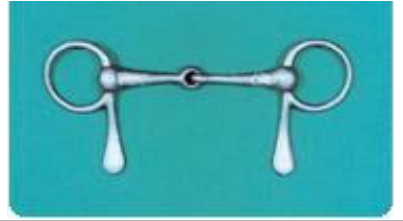
4.1 재갈

- 단 재갈대에 와이어, 체인 또는 가죽끈 등 어떠한 것도 부착할 수 없으며 재갈대 전체에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은 사용 가능
-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의 재갈대는 일반 재갈과 같은 재질(steel)이어야 함
- 심판위원은 가지재갈의 재갈가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음

Ⓢ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	
D형 고무 재갈 (Rubber covered Dee Bit)	고무 일자 재갈 (Rubber covered Straight Bit)
	
고무 가지 재갈 ☞ (Rubber covered Full Spoon Snaffle)	가지재갈 ☞ (Full Spoon Snaffle)
	
반가지재갈 ☞ (Half Spoon Snaffle)	반가지큰고리재갈 ☞ (Half Spoon Ring Bit)
	
계란형큰고리재갈 ☞ (Dexter Ring Bit)	나비재갈 ☞ (Butterfly Bit)

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혀보정재갈 ☞ (Tongue Control Bit)

Triabit 러깅 재갈 ☞ (Triabit Lugging Bi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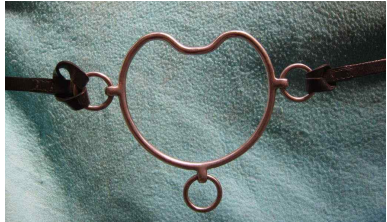
D형 구리재갈 ☞ (Racing Dee Bit with Copper Mouth)

D형 혀보정재갈 ☞ (Racing Dee Bit with Tongue Control)

4.2 재갈보조 장구

- 혀보정끈은 수의위원이 승인한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·간접적으로 굴레에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육안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
- 재갈보정판은 안쪽에 침, 솔 또는 기타 돌출판이 있어서는 안 됨
- 견인용 재갈은 예시용으로만 사용 가능

㉡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	
혀보정끈 ㉡ (Tongue Tie)	구각자극판 ㉡ (Bit Burr/Bubble Cheeker)
	
재갈보정끈(Chin Stap)	재갈보정밴드 (Shur win bit holder/Cheekers)
	
재갈보정판(Single Cheeker)	견인용 재갈(Rearing Bit)

4.3 가면

- 눈가면의 덮개는 단단한 가죽,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덮개의 크기는 눈 부위를 완전히 덮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개방한 부분의 크기가 절반 이상이어야 함.
※ 가급적 고무 덮개의 사용은 금함
- 망사가면/망사눈가면의 망사는 단단한 철사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망사눈가면의 덮개는 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에 한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은 경주로 상태 등을 이유로 망사가면/망사눈가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
※ 망사가면은 다른 장치 없이 망사로 된 눈가면 만 사용한 것을 뜻하고 덮개와 함께 쓰는 것은 망사눈가면으로 구분함(2010. 11)
- 예시 및 경주로 입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면 장구는 반드시 굴레 밑에 장착되어야 함
- 망사가면/망사눈가면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 눈가면도 사용 가능하며 조교사는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쪽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
- 틈새형과 3구형은 모두 눈가면으로 신청 후 사용 가능

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단순가면(Mask)



귀가면(Hood)



망사가면(Pacifier/Screen) ㉞



망사눈가면 ㉞
(Pacifier/Screen with Blinker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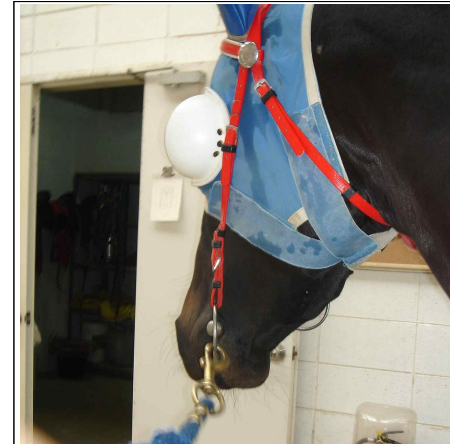


눈가면(Blinkers) ㉞



눈가면-틈새형(Blinker Visor) ㉞

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눈가면-3구형(Blinker Visor) ㉞

※ 망사가면과 망사눈가면 구분에 따른 지침 (2010. 11)

○ 기준 : 망사눈가면을 사용 신청할 경우 종전과 같이 "망사눈가면"에 "눈가면"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"망사눈가면"만 신청

○ 적용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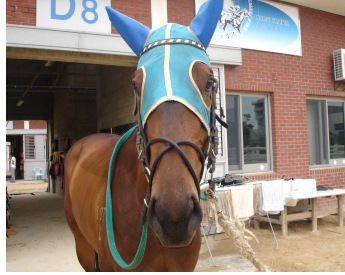
구 분	이 전
망사눈가면	망사눈가면과 눈가면을 각각 신청
망사가면	망사눈가면을 신청

4.4 굴레

- 눈가면과 망사(눈)가면을 착용한 말의 양털코굴레, 양털뺨굴레 사용은 12쪽에 명시된 지침에 따름(2010. 11)
- 양털코굴레, 양털뺨굴레의 직경은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심판 위원은 양털뺨굴레의 길이와 높이가 말에게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
- 양털코굴레는 경주 중 느슨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착용되어야 함
- 양털뺨굴레는 뺨끈에 정확하고 단단하게 부착해야 함
- 조교사는 심판위원의 허가를 받아 양털코굴레와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
- 8자형코굴레(Cross Noseband)가 너무 낮아 말 코(비공)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

	
카베슨코굴레 (Cavesson Noseband)	8자형코굴레 (Cross Noseband)

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고무8자형코굴레(Rubber Covered Cross Noseband)

양털뺨굴레(Winkers) ☞

※ 눈가면류와 양털코(뺨)굴레 동시 사용에 관한 지침 (2024. 6)

- 기준 : 눈가면 또는 망사눈가면을 착용한 말은 양털코굴레 또는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없음
- 적용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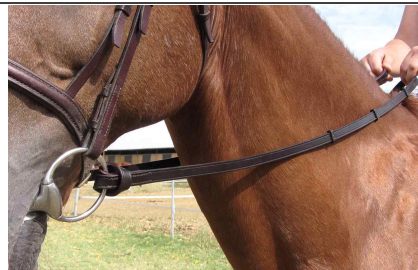
구분	추가 신청 장구
눈가면	양털코굴레
	양털뺨굴레
망사가면	양털코굴레
	양털뺨굴레
망사눈가면	양털코굴레
	양털뺨굴레

4.5 고삐 (2017. 1)

- 고삐의 재질은 면재질(Cotton)과 고무재질(Rubber)을 사용할 수 있음
- 재갈과 고삐를 연결하는 방식은 버클형(Buckle ends)과 매듭형(Loop End)을 사용할 수 있음
- 버클형 고삐 및 매듭형 고삐를 사용할 때에는 경주중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부위에 반드시 테이핑을 해야 함
 - 버클형 고삐 : 재갈연결부위
 - 매듭형 고삐 : 고삐중간 연결부위



버클형 고삐
(Buckle End Rein)



매듭형 고삐
(Loop End Rein)

4.6 다리보호 장구

- 봉대 내 패드 사용이 가능하며 심판위원 및 수의위원은 봉대 고정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



봉대(Bandage)

4.7 보조 장구

- 안장보정대와 가슴걸이는 부담중량에 포함됨
- Cornell Collar의 경우 사용전 반드시 KRA 수의사에 의한 DDSP(Dorsal Displacement of Soft Palate) 진단 및 주행심사(연습주행)를 통한 심판위원(수의위원)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함, 해지의 경우에도 수의위원의 진단을 거친 뒤 해지 가능(2015.8.)

Ⓢ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아이리쉬마르팅게일 링
(Irish Martingale Rings)



안장보정대(Breast Plat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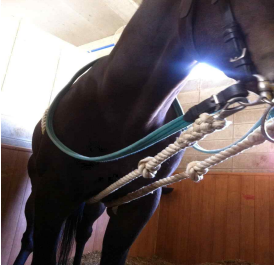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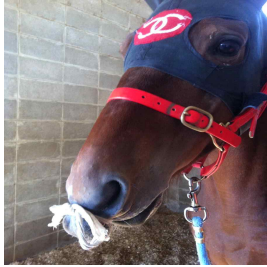


Cornell Collar Ⓢ

4.8 임시사용 장구

- 변형고정마르팅게일, 코보정끈, 출발대담요(2016.7), 스텔리온체인(2018.12)은 경주 중 일체 사용을 금지함

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	
변형고정마르팅게일(살바) ☞	코보정끈(Nose Tie) ☞
	
출발대담요(Barrier Blanket) ☞	스텔리온체인(Stallion Chain)

4.9 채찍

- 경주 및 주행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기수는 채찍 없이 출전 할 수 없다.

■ 서울·부산·경남 경마장 기준

- 채찍의 길이는 플랩을 포함하여 60cm 이상 70cm까지로 한다.
- 경주 및 주행심사에 참가하는 모든 기수는 경주마에게 자극을 줄이기 위한 패드채찍(Padded Whip)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 (2017. 1)
- 경주마 조교를 위해 참가하는 모든 기승자는 경주마에게 자극을 줄이기 위한 패드채찍(Padded Whip)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(2020. 1)
- 채찍대나 플랩에는 어떠한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.
- 플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채찍대의 끝에서 2.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 - 폭은 최소 2cm 이상이고 최대 4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 - 플랩에 다른 재료를 덧대거나 개조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.
- 채찍의 브랜드는 사전에 승인한 브랜드에 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판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심판위원은 채찍의 세부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

■ 제주경마장 기준

- 채찍의 길이는 플랩을 포함하여 60cm 이상 70cm까지로 한다.
- 채찍대나 플랩에는 어떠한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.

- 기존 채찍 외에 경주마에게 자극을 줄이기 위한 패드채찍(Padded Whip)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울·영남경마장 기준을 적용한다.
- 심판위원은 채찍의 세부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

4.10 기승보호 장구

- 경주 및 주행심사에 사용하는 기승 보호 장구는 아래 국제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한다.(2020.1)

안전모(Head Gear)	보호조끼(Safety vest)
○ European Standard EN1384: 1996 이상, PAS 015:1994 이상 ○ Australian Standard AS/NZS 3838 2003 이상 ○ ASTM F1163-01 이상 ○ JRA Standard ARAI ○ VG1 01.040 2014-12 ○ UTAC/CRITT 04/2015 ○ Snell E2001 ○ ARB HS 2012	○ European Standard EN13158: 2000 Level 1 ○ SATRA Jockey Vest Standard Document M6 issue 3 ○ ARB Standard 1998 ○ ASTM F2681-08 이상 ○ JRA Standard DESCENTE ○ ASTM F1937-04(2017)

4.11 편자

관련 규정에 의거 KRA가 지정한 편자란 KRA 수의위원 및 심판위원 또는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자가 사용을 허가하여 KRA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KRA가 지정한 편자에 한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유 사용 장구로 한다.

■ 경주용 편자 사용 지침

○ 사용 가능 편자 규격

- 편자의 재질은 단조공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.
- 편자의 규격은 두께 9mm이하, 무게 150g 이하, 폭 22mm 이하로 한다. 단, 후미편자는 180g 이하, 철두부와 철미부의 각도는 3도 이하로 한다.
- 철심의 접지면에서 돌출은 철두부 (내측 및 외측의 첫 번째 못구멍 사이의 범위) 내에서 높이 2mm 이하로 한다.
- 고무, 우레탄, 가죽 등을 편자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저면 전부를 덮지 않아야 하며, 두께는 3mm 이하, 너비*는 편자의 폭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* 편자의 내측으로 10mm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.

○ 경주 및 주행심사에 사용하는 편자의 예시(2026. 7월 기준)

편자 브랜드
위너(Winner), 진흥(Jinheung), 카툼(Cottom), 커캇(Kerckhaert), 크로익스(St. Croix Forge), 빅토리(Victory)

○ 편자 사용 지침

- 편자 장착을 위한 못은 편자 (한 개)당 5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, 굵기의 내·외측에 각 2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. 못 머리 부분의 돌출은 2mm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글루온편자(Glue-on Shoe)와 에퀼락스편자(Equiloxed Shoe)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2010. 11)
- 쿠션편자 또는 패드편자를 사용하는 경우 좌·우 양발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하며, 일반편자와의 혼용은 금지한다.
- 수의위원 또는 심판위원은 이미 등록된 편자라도 지나치게 마모가 되었거나 임의 가공 또는 별도의 부착물을 부착함으로써 그 결과가 출전마 자신의 안정성 및 다른 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수의위원 또는 심판위원은 필요한 경우 조교사 또는 장제사에게 출전마 및 경주마에게 부착하는 편자 종류에 대한 내용을 경주 전·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경주는 물론 주행/출발심사 시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편자를 부착해야 한다(단 제주경마장은 예외로 함).
- 상기 사용지침과 별도로 글루온편자(Glue-on Shoe)와 에퀼락스편자(Equiloxed Shoe)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지침을 적용한다. (2010. 11)
 - 조교사는 출전 전날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경마장 수의위원에게 위 편자의 장착 상태를 최종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.
 - 출전 예정 경주 출발 시각 기준 2시간 이내에는 위 편자를 새로 장착하거나 재 장착할 수 없다. 이 경우 조교사는 수의위원 또는 심판위원의 승인을 얻어 KRA가 지정한 기타 편자로 교체할 수 있다.
 - 위 편자의 사용해지 및 승인 신청,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RA에서 정한 지침을 따른다.

■ KRA 지정 편자 종류

Ⓢ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표준 편자 (Standard)



후미 편자 (2" & 3" Wedged)



패스트브레이크 편자 (Fast Break)

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쿠션 편자 (Cushion) ☞



패드 편자 (Hoof Rim Pad) ☞



3/4 편자 (Three Quarters) ☞

☞ : 심판위원 사전 승인 필요



글루온 편자 (Glue-on) ☞



에퀼락스 편자 (Equiloxed) ☞

5. 사용해지 및 승인 신청 방법

- **시기** : 매주 출전신청일 12:00까지, 단 심판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 이후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
- **방법** : 경마행정시스템(R-Man)으로 신청
- **승인제한** : 동일장구의 해지 후 2개월간 재신청 제한기준은 폐지(2016.12) 단, 동일장구의 과도한 신청 및 해지가 반복될 경우 별도 심의 가능
- **사용 및 해지 승인자** : 해당 경마장 심판위원. 끝.